



의안번호

제2호

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서 원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1. 02. 09.

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호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02. 09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차경선 조배식
김진호 박승용
박영자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 (안 제3조)
- 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4조)
- 다. 보호 지원사항 (안 제5조)
- 라. 재정 지원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
- 나. 입법예고 : 2021. 2. 9. ~ 2. 13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공무원 등”이란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공무원 근로자
3. 기간제 근로자
4.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(이하 “민원인 등”이라 한다)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폭언·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·고발장을 작성해 주고,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(수사기관 허가 필요)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호 지원사항)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.

1. 심리상담
2. 의료비
3.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
4. 법률상담
5.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
6.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시설 확충)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정 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인 등에게 공무원 등이 보복성 소를 제기 당했을 때 2,000만원 이내의 소송비용(변호사 비용 등)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 신청)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 결정)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 원 의원 외 5인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2.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3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5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·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6.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시설의 설치·운영
7.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8.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
9.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·증진

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